경제혁신 3개년 계획 "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."
대한민국 재도약의 힘, 창조경제
경제혁신
희망의 새시대
http://www.motie.go.kr

산업통상자원부 **보도참고자료**

2016년 6월 27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 6.26일(일) 오전 11시)

배포일시	2016. 6. 26. (일)	담당부서	산업부 구주통상과, FTA 정책기획과, FTA 이행과
담당과장	제경희 구주통상과장(044-203-5660) 김완기 FTA 정책기획과장(044-203-5740) 신성주 FTA 이행과장(044-203-5760)	담 당 자	김민정 서기관(044-203-5661) 이정주 서기관(044-203-5741) 김이경 사무관(044-203-5764)

브렉시트가 한-유럽연합(EU), 한-영간 통상에 미치는 영향

□ 6.23(목) 영국 국민투표로 브렉시트(Brexit)가 확정됨에 따라 리스본 조약 50조(출구조항*)에 의거하여 영국은 **향후 2년간** 유럽연합(EU)**과 탈퇴협상**을 진행할 예정이다.

* 탈퇴 의사 전달, 유럽연합(EU) 정상회의의 협상 가이드라인 마련 및 승인, 영국과 유럽연합(EU) 집행위원회 간의 협상, 유럽의회 투표, 최종 결정 등을 탈퇴 절차 규정

○ 영국이 실제 유럽연합(EU)에서 탈퇴하는 시점은 **최소 2년 후가 될 전망**이며 그동안은 **한-**유럽연합(EU) **및 그 회원국간 자유무역협정**(FTA)가 한-영간 교역관계에도 **계속 적용된다.**

□ 산업부는 영국에 대한 한-유럽연합(EU) 자유무역협정(FTA) 효과가 **영국의** 유럽연합(EU) **공식 탈퇴시점에 자동 소멸**하지만, 이를 협정문에 반영하기 위해 **한-**유럽연합(EU) **자유무역협정**(FTA)**의 개정이 필요**하다고 판단하고,

* 근거 : 한-유럽연합(EU) 자유무역협정(FTA) 15.15조(영토적 적용범위)에 따라 한-유럽연합(EU) 자유무역협정(FTA)은 유럽연합조약(TEU) 및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(TFEU)이 적용되는 지역에 적용되므로,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할 경우 영국에 대해서는 한-유럽연합(EU) 자유무역협정(FTA) 적용되지 않게 됨

○ **영국이 제외된 한-**유럽연합(EU) **자유무역협정(FTA)**의 영향에 대한 **면밀한 분석**을 통해 우리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럽연합(EU)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.

□ 한편, 향후 영국이 유럽연합(EU)를 탈퇴하는 과정에서 **한국과 영국 간 통상관계에 있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**으로 **양자간 자유무역협정(FTA)의 체결 필요성**이 대두되고 있다.

○ 산업부는 향후 유럽연합(EU)과 **영국간의 통상관계가 재정립되는 방향**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**우리기업들의 충격을 최소화**하고 **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(FTA)**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.